

자동차공제 약관 사고부담금 개정 안내



음주·무면허·뺑소니

사고 발생 시 사고부담금

최대 1억 5천 4백만 원



인적 피해 발생 시

대인 I 300만 원 / 대인 II 1억 원



물적 피해 발생 시

의무보험 : 100만 원 / 임의보험 : 5천만 원
(2천만 원 이하) (2천만 원 초과)

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

자동차공제 약관

사고부담금이 바뀝니다.

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 강화

- ✓ 대인·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강화
- ✓ 대인·대물 임의보험 음주운전·뺑소니 사고 면책 도입

사고부담금 개정 내용

개정내용 요약

임의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 규정 신설
(2020. 6. 1. 이후 책임개시계약 사고건부터)

- 대인배상 II : 1사고당 **1억 원**
- 대물배상(2천만 원 초과) : 1사고당 **5천만 원**

변경 전

구분	음주	뺑소니	무면허
대인 I	300만 원		300만 원
대인 II			면책*
대물	100만 원		100만 원 (2천만 원 초과 면책)

* 기명조합원의 명시적·묵시적 승인이 있는 경우

변경 후

구분	음주	뺑소니	무면허
대인 I	300만 원		
대인 II	1억 원		
대물	2천만 원 이하 손해 : 100만 원 2천만 원 초과 손해 : 5천만 원		

* 음주·무면허·뺑소니 사고 : 사고부담금 상향
(최대 400만 원 ▶ 최대 1억 5천 4백만 원)

사례 1 | 대인 사고



음주·무면허·뺑소니 사고로
보행인 사망하여 합의금이 3억 원인 경우

사고부담금 300만 원 ▶ **1억 300만 원**

변경 전

음주·뺑소니 사고

구분	사고부담금	(공제조합) 지급공제금
대인 I	300만 원	1억 4,700만 원
대인 II		1억 5,000만 원
합계	300만 원	2억 9,700만 원

무면허 사고

구분	사고부담금	(공제조합) 지급공제금
대인 I	300만 원	1억 4,700만 원
대인 II	-	면책

- 주) 1. 사망 대인 I 보상한도: 1억 5천만 원
2. 무면허: 의무보험 한도(대인 I) 내 보상
(기명조합원의 명시적·묵시적 승인이 있는 경우)

변경 후

음주·무면허·뺑소니 사고

구분	사고부담금	(공제조합) 지급공제금
대인 I	300만 원	1억 4,700만 원
대인 II	1억 원	5,000만 원
합계	1억 300만 원	1억 9,700만 원

* 사고부담금 초과손해는 공제조합에서 보상

사례 2 | 대물 사고



음주·무면허·뺑소니 사고로
대물 피해 8천만 원인 경우

사고부담금 100만 원 ▶ **5천 100만 원**

변경 전

음주·뺑소니 사고

구분	사고부담금	(공제조합) 지급공제금
대물	100만 원	7,900만 원

무면허 사고

구분	사고부담금	(공제조합) 지급공제금
대물	100만 원	1,900만 원

- 주) 무면허: 의무보험 한도(2천만 원) 내 보상
(기명조합원의 명시적·묵시적 승인이 있는 경우)

변경 후

음주·무면허·뺑소니 사고

구분	사고부담금	(공제조합) 지급공제금
2천만 원 ↓	100만 원	1,900만 원
2천만 원 ↑	5,000만 원	1,000만 원
합계	5,100만 원	2,900만 원

* 사고부담금 초과손해는 공제조합에서 보상